

심 사 보 고

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

산업경제위원회
2002. 6. 21.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2002년 6월 5일

· 회부일자 : 2002년 6월 5일

다. 상정 일자

○ 제201회 임시회

·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2.6.21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한 철 환)

가. 제안 이유

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 (2002.1.14 개정, 법률 제6598호)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수리계의 등록 및 지도감독 등 사무가 시장·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됨에 따라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

나. 주요 글자

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희)

-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,
- 2002. 1. 1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인 수리계의 등록 및 지도감독 등 사무가 시장·군수의 권한으로 바뀌어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 생략 ”

5. 토 론 요 지 : “ 생략 ”

6. 심 사 결 과 : “ 원안 가결 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 없 음 ”

8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 없 음 ”

(영) 12 4 08E

9. 별 첨

◎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 - 충청북도지사제출

부 도 보 사 첨

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
제출
충청북도지사
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
제출
충청북도지사

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 폐지조례안